

보상계획 공고

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『가칭)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』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9월 29일

경 상 남 도 교 육 감



1. 공익사업의 개요

사업의 명칭	사업의 위치	사업의 규모	사업시행자
가칭)남해꽃내중학교 신축공사	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	24,435㎡	경상남도교육감

2. 보상대상(추가 편입 토지) 및 열람내용

가. 대상

구분	소 재 지
토지	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30-14, 1130-6, 1130-15, 1130-16, 1131-18, 1131-19, 1131-6, 1131-20, 1131-13, 1132-10, 1132-13, 1132-14, 1135-4, 1136-7, 1136-8, 2042-9

나. 토지조서 목록: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ne.go.kr>)

【 정부3.0정보마당 → 예규/고시/공고/지침 → 공고 】

※ 해당 목록은 홈페이지 게재,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 및 개별 통지

3.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2017. 9. 29.(금) ~ 2017. 10. 16.(월)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: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(3층), ☎055-268-1482

4. 보상 시기: 2017년 11월경 보상협의 예정(추후 개별 통보)

5. 보상 방법 및 절차

가. 감정평가업자 추천

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2)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.

나. 보상액 산정방법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3인(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 가격을 결정합니다.

다. 보상 방법: 현금 보상

라. 보상 절차: 손실보상 협의(계약 체결)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